

### 1. 일반 사항

**1.1** 본 일반 구매조건은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이하 “계약자”)와 주문을 내는 바스프 법인(이하 “발주자”) 간의 모든 (향후) 납품 및 서비스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본 일반 구매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다른 서면상 합의한 계약 조건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 계약자가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 공급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자가 유보없이 본 일반 구매조건을 수용하는 증거가 된다.

**1.2** 발주자가 해당 내용을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만 계약자의 일반 비즈니스 조건이 적용된다. 발주자가 계약자의 일반 비즈니스 조건을 포함하는 또는 언급하는 계약자의 서신을 참조하더라도 이것이 발주자가 그 일반 비즈니스 조건을 본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일반 구매조건과 다른 또는 상충되는 계약자의 일반 비즈니스 조건으로 납품하였다는 계약자의 주장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물품/서비스를 수락해야 할 경우에도 계약자의 일반 비즈니스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청약

**2.1** 청약과 가격 견적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 측의 의무를 야기하지 않는다.

**2.2** 청약서에서 계약자는 자신의 제안과 발주자의 문의 간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의에 대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안이 계약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자는 추가적으로 그 제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3** 제안은 명확하고 상세하고 완전해야 한다.

### 3. 납품 일자,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의 변경

**3.1** 계약자는 합의한 납품 일자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를 각각 준수해야 한다. 물품 납품에 관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이하 “목적지”)로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정규 영업 시간 내에 결함이 없는 물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해야 한다. 납품 합의 내용에 조립/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계약에 명시된 조립/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결함이 없는 물품을 적시에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품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별도 거래가 아닌 단일 거래로 취급해야 한다. 공식 인수 절차가 법률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양 당사자는 인수 지정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물품 또는 서비스를 미리 납품하거나 부분 납품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3.2**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지연 사유와 예상 지연 시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서비스/물품의

지연 납품 또는 부분 납품을 발주자가 인수하더라도 이것이 서비스/물품의 지연 납품 또는 부분 납품에 대한 발주자의 클레임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는 그 후 언제든지 여타 구제책에 대한 침해 없이,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3.3** 납품할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3.4** 발주자가 계약자의 계약 이행을 위해 문서를 작성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에 따라 지정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하는 문서와 기타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 4. 지속 가능성

**4.1** 발주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직업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노동 및 인권, 책임 있는 기업 거버넌스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표준(이하 “ESG 표준”)을 준수한다. **발주자는 ESG 표준에 대한 이해사항을 공급자 행동강령(<http://www.basf.com/supplier-code-of-conduct>)에서 명시하였다. 발주자는 계약자가 ESG 표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자사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ESG 표준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확약할 것을 요구한다. 발주자는 사전 통지 후에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위탁 업체를 통해 ESG 표준 준수 상태를 점검할 권리를 갖는다.**

**4.2** 계약 이행 시에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자의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건과 환경 보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5. 우수한 품질

계약자는 효율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수행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자는 ISO 9000에 근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 또는 동등한 표준에 근거한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발주자는 사전 통지 후에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위탁 업체를 통해 계약자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 6. 검사 및 인수

**6.1** 발주자와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에 정규 영업 시간 동안에 물품을 제조하는 계약자의 구내를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계약자와 발주자는 검사에 수반되는 각자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6.2** 발주자의 물품에 대한 검사 실시 또는 미실시가 모든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러한 실시 또는 미실시가 발주자의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6.3** 물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 내용은 발주자가 발급하는 인수 확인서에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방식으로) 기입해야 한다. 물품 및 서비스의 사용이나 인수 또는 해당 대금 지급, 또는 계약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지 않는 것이 본 계약상 발주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7. 하도급업체의 활용

계약자는 제3자(특히 하도급업체)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만 채용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계약 수행을 위해 처음부터 하도급업체를 사용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청약서 제출 시에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계약자의 계약상 의무가 하도급 행위에 의해 변경되지는 않는다.

계약자는 (i) 하도급업체가 본 구매 일반조건의 요건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ii) 발주자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

### 8. 납품, 선적, 포장, 위험의 이전

**8.1**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은 "도착장소 인도 조건"(DAP to the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으로 납품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납품 시에는 합의된 사양에 따라 납품 인수증, 포장 명세서, 청소 및 검사 증명서 2부와 기타 모든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모든 선적 서류 및 포장된 물품의 외부 포장에는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문서 번호, 총 중량 및 순 중량, 포장 번호, 포장 종류 (일회용 / 재사용 가능), 완료 일자, 목적지 (하역 지점) 및 수취인을 명기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경우 완료 작업 번호 및 조립 건물도 명기해야 한다.

**8.2** 제3국 납품(수입)일 경우 발주자는 기록상 수입자가 되어야 하고, 계약자는 수입 국가의 관세법 요건에 따라 세관 당국에 진실한 수입 신고를 완료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로 수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8.3**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미국 통제 대상 내용물의 비율을 통지해야 한다.

**8.4** 계약자는 납품 과정에서 발주자의 권익을 지지해야 한다. 물품은 운송 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해 목적지에서 승인된 포장재로 포장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8.5** 국내 납품일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납품 후에 목적지에서 누적된 외부 포장재, 운송 및 판매용 포장을 수거하여 처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8.6** 계약자는 해당 국내 및 국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위험 제품을 포장, 표시, 선적해야 한다. 안전 보건 자료(영어 및/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다른 언어로 작성해야 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해당 당국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8.7**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이 8.1항 및 8.2항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당사자들이 조립/서비스가 포함된 납품에 동의하였을 경우,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계약에 따라 조립/서비스를 완료하고 물품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에게 이전된다.

**8.8** 법률 또는 계약에 공식적인 인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위험 이전은 발주자의 인수 시점에 이루어진다. 공식적 인수에 관한 내용에 합의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인수 확인서를 통해 성공적 인수를 확인한 이후에 손실 위험이 계약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이전된다. 송장 잔액을 결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공식적 인수를 대체하지 않는다.

### 9. 물품 원산지 및 상태

**9.1** 계약자는 상업 서류에 비특혜 물품 원산지(원산지 국가)를 선언한다. 또한 계약자는 해당 시 A.TR 이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물품 원산지를 명시하는 원산지 증명서/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9.2** 해당 납품이 특혜 무역 범주에 해당될 경우,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에 근거한 물품 원산지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의에 따라 특혜 물품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0. 납품/서비스 조건, 이의제기, 결함 발생 시 권리

**10.1** 계약자는 특히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합의된 사양을 준수하여 결함이 없는 물품과 서비스를 납품할 책임이 있고 또한 보장된 특성과 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계약자는 물품과 서비스가 현행 기술 표준 및 (해당 시) 설비 안전, 산업 의학 및 위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고, 유자격 역원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납품하도록 해야 하고 목적지의 모든 해당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납품 품목에 기계, 장비 또는 설비가 포함될 경우 계약 이행 시 기계, 장비, 설비에 적용되는 특별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CE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10.2**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계약자나 그 직원 및/또는 대리인,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의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b) 계약 수행 또는 납품된 물품 및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허가서, 증명서 및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한다.
- (c) 모든 물품, 서비스 및 서류에는 제3자의 저작권, 저당권, 제약사항 또는 청구 사항이 없어야 하고 발주자는 그러한 물품, 서비스 및 서류에 대해 양호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d) 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및 사양은 계약 내용 또는 발주자가 동의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으며, 물품 납품 또는 서비스 수행 후에 합리적인 검사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하자 인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점까지는 발주자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 물품의 제조, 포장, 판매, 납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 물품과 서비스는 주문서 및 그에 포함된 도면 및 사양에서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10.3** 결함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 방법은 발주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시정 장소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목적지 또는 인수 장소로 하며, 법적으로 또는 계약상 합의에 의해 인수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가 알고 있었던 다른 물품 납품 장소로 한다. 계약자가 시정 비용(조립, 분해, 운송 비용 등 모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모든 측면에서 발주자의 지시와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i)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을 수행하지 않거나 (ii) 시정에 실패하였거나 (iii) 시정 유예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결함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

**10.4** 만약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을 수행하지 않거나 시정에 실패하였거나 시정 유예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10.3항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결함을 시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 경비 및/또는 손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매우 높은 손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약자에게 연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정 유예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결함에 대한 계약자의 법적 책임 또는 보증에 근거한 발주자의 추가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5** 품질보증에 근거한 클레임은, 법률에 더 긴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한, 위험 이전 이후 30개월 이내에 제기해야만 유효하다. 시정한 물품 또는 다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해당 결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시점부터 결함을 시정한 시점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품질보증에 근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11. 지적재산권의 침해

계약에 따라 물품/서비스를 납품하고 발주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특허법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이나 기타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할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여타 법적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권 침해의 결과가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에 근거한다면, 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클레임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산권 침해의 방지 및/또는 시정을 위해 발주자에게 발생된 수수료, 경비 및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12. 납품 지연

**12.1** 물품 / 서비스(서류 포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발주자 주문서에 명시된 시간 내에 계약자가 납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납품 연기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 납품에 해당되는 물품/서비스의 가격은 7일마다 0.5%씩 감액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총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7일 미만의 일수는 7일로 간주한다.

**12.2** 8.2항과 관련하여 그리고 12.1항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통관을 위해 지정 장소에 물품이 도착할 때 계약자가 세관 당국에 진실한 수입 신고를 완료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및/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그러한 수입 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당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동 문서/정보의 결여로 인해 발생된, 기록된 또는 검증된 모든 합리적 비용과 경비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회수하거나 원천 징수할 권리를 갖는다.

**12.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계약 조건에 근거하든 일반 법률에 근거하든 간에, 지연 납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자의 권리(해지 권리 포함)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13. 일반 책임, 보험

**13.1** 계약자는 발주자의 물품 사용이나 재판매, 계약자가 공급하는 서류나 정보를 발주자가 사용함, 계약자나 그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 또는 그들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주자가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서 (i) 계약자 또는 발주자의 직원을 포함한 인명 부상이나 사망 (ii) 제3자 또는 발주자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와 관련된 모든 책임, 손실, 경비(변호사 비용 포함) 및 비용(이하 "클레임")으로부터 발주자를 방어하고, 면책하고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13.2** 동일한 작업에서 다수의 계약업체가 협력하거나 각자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어느 업체가 손해를 야기했는지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각 계약업체는 전체 손해액을 발주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대 책임을 진다.

**13.3** 계약자는 제3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하고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의 범위는 제3자 클레임의 결과로서 발주자가 입은 모든 비용(보통 법원 비용, 사법 비용, 변호사 수수료, 조사자 수수료, 보상, 벌금 및 유죄판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적용된다. 계약자가 자신과 관련하여 제3자의 행위 또는 태만의 결과로서

손해를 입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제3자에게 대응해야 한다.

**13.4** 제 13.1 ~ 13.3항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계약자는 자신 또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 하도급업체나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체 경비로 충분한 책임 보증을 가입하여 유지해야 하고 발주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손해 발생 건에 대한 보험 부분 금액의 증거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의 계약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보험 부분 금액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4. 송장, 결제

**14.1** 합의한 가격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송장은 수행한 납품 및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발급한다. 송장은 해당 납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법정 송장 발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자체 청구(평가된 입고 정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필요 데이터를 발주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4.2** 발주자는 각 구매 주문서에 대해 감사 가능한 별도의 송장을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해당 납품/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상 필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송장에는 발주자의 완전한 주문 번호 및, 해당 시, 계약자의 납품 인수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송장과 함께 완료 작업 증명서와 기타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송장 내용은 물품 내역, 가격, 수량, 품목의 순서 및 품목 번호 등 주문서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송장은 발주자가 주문서에 명시된 청구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14.3** 별도 합의가 없거나 해당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결제 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은 해당 부가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송장이 청구 주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자체 청구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결제 기간은 대변 전표(credit memo)를 발급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결제는 계약 준수 상태 및 납품 / 제공한 서비스의 완전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14.4** 발주자가 결제하더라도 이것이 조건 또는 가격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합의 사항과 다르게 납품한 물품/서비스에 관한 발주자의 권리, 검사 권리, 다른 이유로 인한 송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15. 계약의 양도, 이전, 상호 변경, 상계 처리, 유보

**15.1**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5.2** 계약자는 법률에 근거한 계약의 양도 또는 상호 변경 사항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바스프 그룹사의

## 일반 구매 조건

**15.3**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BASF SE(주소: Ludwigshafen (Rhine), Germany) 또는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의 방식으로 BASF SE(주소: Ludwigshafen (Rhine), Germany)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배를 받고 있거나 공통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업체에게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다.

**15.4** 계약자는 분쟁이 없는 또는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청구액만 상계 처리하도록 허용된다. 계약자는 유보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되는 클레임의 근거가 동일한 계약 관계일 경우에만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 16. 해지 - 취소

**16.1** 지속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서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적절히 납품된 또는 수행된 사항 및 계약자가 입증한 취소 비용을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익의 상실 또는 기타 결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6.2** 다음의 경우, 발주자는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a) 계약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발주자가 정한 합리적 기간 내에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b)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납기 내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 또는 청산 절차가 임박하였거나 진행 중일 경우 또는 비즈니스 수행을 중단할 경우
- (c) 법률 규정 또는 공식적 규정 때문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경우
- (d) 계약자(또는 그 하도급업체)가 4.1항에 명시된 표준(예: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에 관한 표준)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주문을 해지하고 정당한 동일 사유로 계약자와의 기존의 추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발주자는 해지 시점의 기존 여타 계약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계약도 비례 정산 기준으로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계약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경비 보상 또는 보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16.3** 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 계약 취소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적 권리는 본 16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16.4**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그리고/또는 계약 이행 목적으로 또는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모든 문서, 기록, 계획서 및 도면을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요건은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17.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자의 제거 의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자는 자체 경비로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발주자의 구내에서 사용/보관하는 설비, 공구 및 장비를 즉시 해체하고 제거해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의 작업으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이나 파편을 자체 경비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계약자가 합리적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발주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고 발생 경비를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18. 문서, 기밀유지, 사용권

**18.1** 계약자는 계약상 이행 한도가 경과되지 않도록 합의된 계획 수량, 계산 내역 및 기타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문서를 검토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계약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8.3**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모형, 샘플, 도면, 데이터, 자료 및 기타 문서(이하 "발주자 문서")는 발주자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 문서를 보유할 권리가 없다. 계약자는 모든 발주자 문서에 대한 발주자의 독점적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18.4** 계약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기술, 과학, 상업 정보 및 기타 정보 특히 발주자 문서로 제공된 정보(이하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기밀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산업재산권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접근하도록 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수행을 위해 이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하도급업체와 기밀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밀 정보는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10년 동안 계속 적용된다.

**18.5** 발주자가 공개하기 전에 계약자가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 또는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이 기밀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밀유지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본 기밀유지 요건에서 제외되며, 다만 계약자가 그 사람의 기밀유지 의무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8.6** 계약자는 자사의 직원 및 계약 수행을 위해 배치한 기타 대리인들이 적절한 계약상 합의를 통해서 위의 기밀유지 조항에 따라 기밀을 유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이러한 의무 준수를 확인해줘야 한다.

**18.7** 계약자는 특히 항상 취득하는 기밀 정보의 분실 또는 무단 접근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책과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시설, 저장소(repository), IT 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및 기타 정보 저장 장치 특히 기밀 정보가 포함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출입 대책을 마련하여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본 조항에 따라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도 포함된다. 계약자가 기밀 정보를 분실했거나 타인이 기밀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18.8**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취소 불가능한, 조건 없는, 로열티가 없는, 지역/내용/시간에 관한 제약이 없는 사용권, 즉 모든 이미지, 오디오 및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전자 매체, 인터넷 및 온라인 매체 등 모든 알려진 매체 형태로 된 모든 계획, 도면, 그래픽, 계산내역 및 기타 계약 관련 문서를 계약상 합의한 목적으로 또는 계약 상 암시된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정보는 계약자 자신이 작성하였거나 제3자가 작성했을 수 있다("작업 결과물").

**18.9** 또한 계약자는 자신이 특별히 발주자를 위해 생성한 또는 제3자가 발주자를 위해 생성한 작업 결과물을 사용하고 활용할 배타적 권리를 발주자에게 부여해야 하고, 제3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계약자 또는 제3자의 기존 권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는 제3자에게 작업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중간 변경 및 개정 포함)할 수 있는 동일하고 완전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할 권리를 갖는다.

### 19. 홍보 금지, 분리적용, 준거법, 관할지역

**19.1** 계약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또는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발주자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언급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19.2** 계약의 임의 조항 또는 조항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것이 전체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3** 계약은 발주자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실체법에 따라 해석하고 그 적용을 받는다. 다만 (i)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1980.4.11) 및 (ii) 그 국가의 법률 저촉에 관한 해당 법률 규정의 적용은 배제한다.

**19.4**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법 관할구역은 발주자 회사 설립 장소의 관할 법원 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